
제안요청서

- K-AI 도시 기술 로드맵 홍보콘텐츠 제작 -

2026. 6.

스마트도시협회
시범도시지원팀

목 차

I. 과업 개요	1
II. 제안 요청사항	4
III.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6
IV. 제안서 평가	20
V. 계약상대자 선정	24
[첨부] 제안서 관련 서식	27

1. 과업 개요

□ 과업명 : K-AI 기술 로드맵 홍보 콘텐츠 제작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9.18.까지

□ 예산 : 30,000,000원(제한경쟁입찰,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과업내용

- (메인 홍보영상) 3~5분 분량 1편
 - 해상도: 4K UHD(3840×2160), MP4(H.264, 29.97fps)
 - 한국어 자막 삽입본 + 영문 자막 삽입본 각 1편
 - 한국어 자막 SRT 파일 + 영문 자막 SRT 파일 각 1건
 - 나레이션·BGM·효과음 별도 트랙 분리 원본 납품
 - 편집 원본 프로젝트 파일(Premiere Pro 또는 동급) 및 소스 파일 일체
 - 유튜브·포털 등재용 썸네일 이미지(1280×720 이상) 3종 이상
 - 한국어 자막 SRT 파일 + 영문 자막 SRT 파일 각 1건
 - * 도시 패러다임 전환부터 K-AI시티 미래 비전까지 완결된 스토리 구조로 제작
- (숏폼 영상) 60초 이내 2편
 - SNS·온라인 채널 배포에 최적화된 형식으로 플랫폼별 최적화

규격(세로형·가로형·정방형) 적용

- 각 영상별 메타데이터(제목·설명·해시태그) 문서 1건

* SNS·온라인 채널 배포에 최적화된 형식으로 구성

○ (홍보 이미지 콘텐츠) 국·영문 병기 적용한 이미지 콘텐츠

- 고해상도 홍보 포스터(300dpi 이상), 카드뉴스, SNS 배너 발표자료 활용

- 원본 편집 파일(AI·PSD) 및 출력용 파일(PDF·JPG) 일체

□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2. 추진배경 및 목적

□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도시 스스로 인지·판단·최적화 하는 '지능형 자율도시(AI시티)'로의 패러다임 전환 가속화

○ 미국·중국 등 선도 국가는 AI·로봇 기반 도시 실증과 산업화를 경쟁적으로 추진 중이며, 도시 운영체제(OS) 선점을 위한 국제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

□ 정부는 U-city 및 스마트도시 전환 과정에서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AI 국가전략 및 'AI 3대 강국' 실현 목표 추진 중

○ 인공지능 대전환(AX)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K-AI 시티 기술 로드맵이 수립됨에 따라 대외적 홍보 추진 필요

□ 수립된 K-AI시티 기술 로드맵의 핵심 개념, 비전, 서비스에 대한 대·내외 홍보 콘텐츠 제작

- 도시 패러다임 전환의 흐름과 K-AI시티가 기존 도시와 다른 차별점을 국민 눈높이에서 직관적으로 전달하여, 정책에 대한 범 국민적 공감대 형성
- K-AI시티 핵심인 도시지능센터*의 오케스트레이션(Urban Orchestration)** 개념을 시각화하여, AI가 도시 전반을 연계·최적화하는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도 제고
 - * CCTV 관제 중심 기존 센터에서 고성능 GPU·NPU 기반 AI 인프라로 고도화된 K-AI시티 핵심 거점
 - ** 개별 운영되던 도시서비스를 AI가 데이터 기반으로 연계·협력·최적화하는 차세대 운영 개념

3. 기획 방향

- 도시 패러다임 전환(U-City → 스마트도시 → K-AI시티)을 시민 삶의 변화 중심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하여 직관적 공감이 가능한 영상으로 기획
- 도시지능센터의 오케스트레이션(Urban Orchestration) 개념을 시각화 핵심 축으로 설정, K-AI시티의 차별적 정체성을 명확히 전달
- 교통·안전·환경 등 분야 특화 서비스 2종을 실생활 시나리오로 영상화하여 추상 기술개념의 시민체감적인 콘텐츠 구성
- 기술 중심이 아닌 시민 삶 중심 관점에서 K-AI시티 미래상을 제시 하여 안전·건강·편의가 향상되는 인간 친화적 도시 비전으로 공감대 형성

○ 본 과업의 핵심 특성은 현존하지 않는 미래 도시의 모습과 서비스를 영상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실사 촬영 중심이 아닌 CG·모션그래픽, 디지털트윈 시각화 등 정교한 디지털 제작 기술이 핵심 역량

*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도시지능센터의 운영 모습, 다중 에이전트 간 데이터 연계 장면, AI 로봇의 도시문제 해결 시나리오 등을 고품질 CG·3D으로 시각화하는 것이 본 용역의 핵심 과업

1. 주요 내용

- 메인 홍보 영상 기획 및 시나리오 제작
 - K-AI 시티에 대한 핵심가치 및 정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추진 방향에 맞는 콘텐츠 방향 및 구성 기획
 - 기술 나열 방식이 아닌 시민 일상 시나리오 중심으로 구성하여, 일반 국민이 AI시티를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
 - 시나리오에는 장면별 CG 구현 방식·나레이션·자막·모션그래픽 구상을 명시하고, 스마트도시협회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 단계 진행
 - 아래 3대 핵심 콘텐츠를 반드시 포함하여 스토리 흐름에 맞게 구성

<핵심 콘텐츠>

- (K-AI정의) 도시패러다임 전환 스토리
 - U-City → 스마트도시 → K-AI시티로의 도시 진화과정 도시 모습 CG로 시각화
 - 도시지능센터를 중심으로 교통·안전·환경·에너지 등 도시 전반이 유기적으로 연결·조율되는 오케스트레이션 개념을 3D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
 - 기존 도시와 K-AI시티의 차별성을 도시별 비교 인포그래픽으로 명시하고, 시민 삶 중심의 인간 친화적 미래도시 이미지 시각화
- (특화 서비스) 시민 체감도 및 이해도가 높은 분야를 중점으로 AI도시만의 특화 서비스 2종 실생활 시나리오로 영상화
 - * (예시) '인파 밀집도, 기온, 민원 등'을 도시 데이터를 결합해 ^{1단계}도심 내 안전사고 징후 사전 파악, 시뮬레이션 → ^{2단계}해당 구역 내 교통신호, 대중교통, 경찰 등 에이전트에 명령 하달 → ^{3단계}사고지역 에이전트가 현장 통제, 드론 현장 중계, 현장 통제 로봇 투입
- (미래상) 도시지능센터 중심으로 디지털트윈·도시 AI 모델·다중 에이전트·로봇플랫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미래 도시 전경을 고해상도 3D 렌더링으로 구현

○ 영상 제작 및 편집

- 영상 제작 전 과정에 전문 인력(총괄PD·편집PD·작가·CG·VFX

디렉터 등)을 구축·투입하고 단계별 과업 내용을 구성

<제작 참여 인력 요건>

- (총괄PD) 공공·정책 분야 홍보영상 또는 CG·VFX 중심 영상 제작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과업 전 기간 전담 참여를 원칙으로 함
- (CG·VFX 디렉터) 3D 모델링·렌더링·모션그래픽 등 디지털 영상 제작 전문 인력 2인 이상 참여 필수, 유사 포트폴리오 사전 제출
 - * 도시 조감도·AI 인프라·로봇 시나리오 등 고도의 CG 구현 능력 보유 여부를 제시
- (영상 편집PD) 나레이션·자막·음향·CG를 통합하여 최종 편집하는 전문 인력 1인 이상 참여, 편집 소프트웨어 숙련도 확인
- (스크립트 작가) 정책·공공 분야 콘텐츠 작성 경험자를 우선 선발 기술 용어를 시민 눈높이의 언어로 전환하는 역량 필수
- (비주얼 디자이너) 홍보 포스터·카드뉴스·SNS 배너 등 이미지 콘텐츠 제작을 전담하는 그래픽 디자인 전문 인력 1인 이상 참여 하여 영상 콘셉트와 일관된 브랜드 아이덴티티(색상·서체·레이아웃) 유지를 위해 CG·VFX 디렉터와 협업하여 디자인 방향 조율 및 제작
- 주요 참여 인력 변경 시 사전에 스마트도시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단 교체 시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조치

- 도시 전경·도시지능센터 내부·에이전트 연결 흐름 등 주요 장면은 3D 모델링 및 렌더링으로 제작하되, 사실감과 미래지향적 심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수준의 품질로 구현
- 촬영일 최소 5일 전 기획서·시나리오 등 영상 제작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스마트도시협회에 제출하고 승인 후 진행
- 4K UHD(3840×2160) 해상도, MP4(H.264, 29.97fps) 형식으로 제작하며, 전문 장비 및 최소 2대 이상 카메라 투입(사전 협의)
- 자막·CG·모션그래픽·인포그래픽·BGM 등을 활용하여 기술 개념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하는 후반 작업 수행
- 나레이션은 영상 콘셉트에 최적화된 전문 성우·아나운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고품질 음성 합성 기술을 활용하여 전달력 확보
- * 자료화면 사용 시 스마트도시협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구성·화질·녹음 상태·효과음 등에 대한 수정 요구 시 즉시 조치

○ 숏폼 영상 기획 및 제작

- 메인 홍보영상의 핵심 메시지를 압축하거나 독립 주제로 구성하여 SNS·유튜브 쇼츠·인스타그램 릴스 등 온라인 채널 배포에 최적화된 60초 이내 숏폼 영상 2편 이상 제작
- 플랫폼별 시청 환경(세로형·가로형·정방형)을 고려한 화면 비율 및 자막 구성으로 제작하여 채널별 최적화된 형태로 납품
- 짧은 호흡 안에 K-AI시티의 핵심 개념과 시민 체감 서비스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핵심 메시지 중심의 간결한 편집 적용
- 숏폼 영상별 제목·설명문·해시태그 등 온라인 게시에 필요 메타데이터를 함께 작성하여 납품

○ 홍보 이미지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메인 홍보영상과 일관된 디자인 콘셉트(색상·서체·레이아웃)를 유지하여 K-AI시티 아이덴티티가 통일된 이미지 콘텐츠 제작
- 국제행사(WSCF·EXPO) 현장 게시 및 발표자료 삽입에 적합한 고해상도(300dpi 이상) 홍보 포스터를 국·영문 병기로 제작
- 온라인 배포용 카드뉴스·배너 등 디지털 홍보물은 SNS 채널별 권장 규격에 맞게 제작하여 즉시 활용 가능한 형태로 납품
- 납품 시 원본 편집 파일(AI·PSD 등)과 출력용 파일(PDF·JPG)을 함께 제출하여 향후 수정·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리

2. 과업 추진 일정

세부내용	기간(개월)		
	1	2	3
1. 메인 홍보 영상 기획 및 시나리오 제작			
2. 자료 수집 및 분석			
3. 영상 제작 및 편집			
4. 숏폼 영상 기획 및 제작			
5. 홍보 이미지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추진일정은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조정 할 수 있음

3. 과업의 일반지침

1) 과업의 기준

- 본 과업에서 이용하는 기본통계자료는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한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 등의 보고서 및 통계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한다.

2) 과업의 기준 사전 협의절차 이행

- 본 과업수행 중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 용역수행상의 주요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한다.
- 본 과업의 수행상 기술 및 법률 등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용역을 수행할 경우 위탁범위 및 내용, 위탁금액, 위탁의 필요성,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용역의 변경

- 용역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 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과업내용의 추가 등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추가 업무 발생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와 용역수행기관이 협의한다.
- 본 용역에 대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할 때,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중지 또는 과업연기가 필요할 때, 기타 부득이한 사유(해외사업 특수성으로 인한 기간 소요 등)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그리고 자문회의, 심의회, 보고회, 협의 등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용역수행기관이 협의한다.

-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보고서에 하자가 발생하여 용역 성과품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성과품을 보완·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지시서 및 설계 예산내역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일반조건

- 용역진행에 대하여 발주처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 책임 연구원이 참석하여 용역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처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각 부문별 용역항목은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 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추진한다.
- 용역의 최종결과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보고서를 제출한다.
- 본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의유출에 대한 제반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국내·외 기존자료는 물론 시장조사와 관련문헌을 통한 외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용역내용에 반영한다.
-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특별조건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의 권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 과업수행으로 인한 자료 등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 중 사업책임자(책임연구원)를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참여인력의 변경 시에는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과업일부에 대하여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기 타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한다.
-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 승인 없이 타목적용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이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다.

4. 과업 수행방법

- 과업 수행 시 문제점, 애로사항 등 해결을 위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야 한다.
 - * 필요시 관련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학계, 산업계 등)를 위촉하며 자문 실시
- 자료수집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대사관, 해외건설협회, 관련 외국기업 등의 자료 등을 적극 활용한다.
- 과업수행자는 착수/중간/최종보고를 진행해야 하며, 월간 공정보고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용역 추진상황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제출한다.

5. 발주처 보고

1) 착수보고

- 과업의 착수보고서 및 기획안은 용역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동 보고는 과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과업수행자 명단·기술자의 인사기록·작업조직의 편성·착수 시점 인력별 他 과업 추진여부·보안각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중간보고

- 중간산출물(스토리보드, CG시안 등)은 과업 착수 후 1.5개월 이내 또는 협회의 담당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맞춰 전자문서와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최종보고

- 최종산출물(안)은 준공 3주 전에 제출하고, 협회의 검토가 완료된 이후 수정 및 보완을 마친 최종산출물은 지정된 일자까지 전자문서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 협회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다.
-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협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은 협회에 귀속된다.

- 계약 이후 과제별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동 과업의 내용 또는 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다.
- * 협회는 필요시 선정된 과업수행기관(용역책임자)과 협의를 거쳐 과업수행 계획을 수정·보완(목표, 내용 및 범위 등을 구체화, 명확화)할 수 있음

2) 저작권 등 관련 사항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5호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본 사업 결과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자는 협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회는 계약목적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 영상물에 사용하는 서체·이미지·음원·3D 에셋(Asset)·CG 소스 등은 반드시 정품 또는 라이선스가 확보된 소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을 위한 모든 저작권 관련 사항에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타인의 저작권·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저작권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개발된 제작물 및 일체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스마트도시협회에 귀속되며, 모든 CG 원본 소스 및 편집 원본 파일도 함께 납품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자료와 성과품은 스마트도시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사업수행자는 협회의 동의 없이 수정, 변경, 활용할 수 없고, 제작사업자는 저작인격권을 근거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을 포함한 모든 제작물은 협회의 기획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 저작권, 초상권 등 관련 민원 분쟁 발생 건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확인 및 수정 요청에 응해야 한다.
- 사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하면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면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3) 초상권 및 촬영 동의

-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출연자·배경 인물 등 포함)에 대해 촬영 전 서면 동의서를 확보하여야 하며, 동의서 원본은 납품 시 제출
- 특정 장소·건물 촬영 또는 CG로 재현 시 해당 기관의 사전 확인을 거치고, 필요한 경우 촬영 허가서 사본을 협회에 제출
- 초상권·장소 허가 미취득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과업수행자 부담

4) 성과품 제출

성과품	제출형태	제출시기
착수보고서 (기획안)	10부	착수 후 14일 이내
주간/월간보고서	1부	(주간) 매주 목요일 (월간) 매월 5일
중간산출물 (스토리보드, CG시안)	동영상(안) 1식 홍보포스터(안) 1식	착수후 1.5개월 이내
최종산출물	· 동영상 파일 1식 (메인1개, 숏폼2개) · 홍보포스터 1식 · USB · 결과보고서	준공시

* 모든 산출물은 USB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해야 함

5) 보안대책

-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 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발주처에 전량 납품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자문위원 등)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작성항목	작성내용
I.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 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2. 주요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 제시 (개인일 경우 용역책임자의 이력 사항)
3. 사업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동영상 제작 관련된 용역실적
II. 제안 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표	○ 과업의 목표, 범위, 전제조건, 과업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과업방향 및 내용	○ 과업의 방향과 기획 내용, 제작 방식 등을 기술
3. 추진전략	○ 접근방법, 추진전략, 수행 절차 등의 독창성 및 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기법 제시
III. 사업 수행 부문	
1. 수행 방안	○ 수행 절차 및 환경 분석 등 세부 방법론 기술 및 적합한 수행방안 제시
2. 수행 조직	○ 참여인력 규모, 각 참여인원별 업무분장 내역 및 이력사항 기술
3. 추진 일정 및 계획	○ 사업 수행 절차 ○ 부문별 추진일정 세분화
4. 사업 관리방안	○ 품질관리, 위험관리, 보고 및 검토계획, 보안대책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제시
IV. 기타	
추가제안 부분	○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할 사항의 내용과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추가·수정이 필요한 사항

* 위의 목차는 예시이므로 제시한 내용을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재구성 가능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 일반사항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예시)”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되 필요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서는 본 사업의 목적 및 과업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 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내용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하고, 정량적 성과 및 실행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제안서는 표지를 제외한 본문을 A4용지 30매 이내로 아래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며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A4 크기로 접어 포함할 수 있음.
 - ※ 제안요약서는 5매 이내로 작성
 - ※ 본문은 표지·목차·간지·별첨자료를 제외하여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페이지 제한을 초과한 부분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함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한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체결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단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가 요청 시 제외),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제안자는 발주처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2) 제안서 효력에 관한 사항

-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가 상이한 내용인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 계약 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3) 유의사항

- 투입인력 중 주관기관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 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추가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이 정한 기간 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추가자료 제출을 통해 제안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 제안서 제출마감 이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또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문의처 : 스마트도시협회 김수지 과장(02-2664-6114)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의함

IV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기술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평가 방법
제안 업체 일반 현황 (20)	기관평가	-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 또는 예산규모	5	계량
		- 최근 3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횟수	5	계량
	과업수행 전 문 성	- 과업참여 전문 인력의 보유수	5	계량
	경영상태	- 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결과)	5	계량
과업 수행 능력 (80)	사업 이해도 및 수행능력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과업범위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이해	30	비계량
		- 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 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책 도출의 적정성		
기획 능력	- 기획의 우수성, 차별성, 독창성	30	비계량	
	- 구성안의 흥행성(재미, 흥미, 공감 등)			
제작 능력	- 동영상 및 CG기술의 표현력, 연출력, 적정성	10	비계량	
	- 썸네일, 카드뉴스 등 이미지 콘셉트 제안의 구성력, 표현력, 적정성			
사업 관리	- 관리계획 및 AS 계획 등	10	비계량	
	계		100	

※ 공동수급체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계량평가 (제안업체일반현황 평가항목)의 공동수급체의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사의 평가점수를 가중평균(출자비율 기준) 하여 산정(*각 항목 별도의 평가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에 따름)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함

※ 계량평가에 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점을 부여함

2. 제안서 기술능력 세부 평가기준

□ 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기관평가 (10점)

-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 또는 예산규모 (5점)

구 분	15억원 초과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미만
점 수	5	4	3	2

※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이 있는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 최근 3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횟수 (5점)

구 분	0회	1회	2회	3회 이상
점 수	5	4	3	2

※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에서 입찰 참가제한 등 징계를 받은 횟수

○ 과업수행 전문성 (5점)

구 분	해당분야 전문인력* 보유수				
	5인 이상	4인 이상 5인 미만	3인 이상 4인 미만	2인 이상 3인 미만	1인
점 수	5	4	3	2	1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각 업체의 능력을 합산한 수치로 평가함

※ 전문인력이란 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으로서, 입찰공고 전일 기준으로 업체에 근무사실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재직증명서 1부,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가입증명서 중 1부(택일)에 의하여 증명함)

○ **경영상태** (5점)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것만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3.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함.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비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상대평가) 평가항목 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으로 구분하고 아래 배점기준 적용

항목 구분	배점 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사업 이해도 및 수행능력	30~26	25~21	20~16	15~11	10~1
기획 능력	30~26	25~21	20~16	15~11	10~1
제작 능력	10~8	7~5	6~4	5~3	2
사업 관리	10~8	7~5	6~4	5~3	2

□ 기술능력평가 점수 산정

- (평가점수)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득점 합계 × 90%

※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점수 산정

3. 가격 평가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4. 제안서 발표 평가

- 일시, 장소 : 개별 통보,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

□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 323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소지한 자

□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선정기준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평가) 기술제안서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가격평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입찰가격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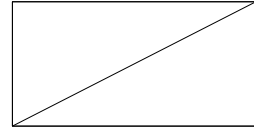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한 결과, 고득점을 얻은 자를 우선으로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기획재정부 고시(제2022-16호, 2022.7.1.)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7조제3항」에 따라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 가능,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거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타

-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입찰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양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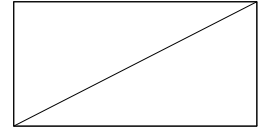
과업제안서

용역명 : K-AI 도시 기술 로드맵 홍보콘텐츠 제작

기관(업체)명 :

[인]

<양식 2>



증빙자료

용역명 : K-AI 도시 기술 로드맵 홍보콘텐츠 제작

기관(업체)명 :

[인]

<양식 3>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 소			
5. 대표 전화번호	(Tel.)	/ (Fax.)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			
8. 예산규모 (매출액)	2024년	2023년	2022년
9. 상시 종업원수			
10.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양식 4>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0000년도	0000년도	0000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 문1			
	부 문2			
	부 문3			
	부 문4			
	계			

연 도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경상 이익	당기 순이익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부채 자본 총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 공인회계사의 확인 있는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첨부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별도 표시

- 부채비율 = (타인자본/자기자본) × 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 매출액순이익율 = (당기순이익/매출액) × 100

<양식 6>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학력사항	대학(교)	전공	졸업년월	년	월
	대학(원)	전공	졸업년월	년	월
자격증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담당업무			참여율		

경력 상세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주) 1. 본 과업 관련 경력만 기재
 2. 참여자 전원을 개인별로 기재(참여율은 본 과업에서 차지하는 참여비중으로 기재)

<양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

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로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 ○ (인)

○ ○ ○ (인)

<양식 8>

위 임 장

- 소속 :
- 주소 :
-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K-AI 도시 기술 로드맵 홍보콘텐츠 제작」 용역 입찰참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스마트도시협회장 귀하

<양식 10>

산출내역서

○ 용역명 : K-AI 도시 기술 로드맵 홍보콘텐츠 제작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인 건 비	총괄 P D	식			%	
		CG·VFX 디렉터	식			%	
		편집 P D	식			%	
		스크립트 작가	식			%	
		비주얼 디자이너	식			%	
		인 건 비 계				%	
	② 경 비	여 비	식			%	
		유 인 물 비	식			%	
		재 료 비	식			%	
		회 의 비	식			%	
경 비 계					%		
③ 순 용역원가 (①+②)						%	
④ 일 반 관 리 비			%			%	
⑤ 이 윤			%			%	
⑥ 총 용역원가 (③ + ④ + ⑤)						%	
⑦ 부 가 가 치 세 (⑥ 의 10%)			%			%	
제 안 금 액				천원미만 절사		%	

보안각서

본인은 K-AI 도시 기술 로드맵 홍보콘텐츠 제작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련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스마트도시협회장 귀하